

행정기획위원회  
소관

(가) 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 
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

성 북 구  
(일자리정책과)

# (가)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의안 번호	54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 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지역 청년 창업 거점시설로서 26. 1월 준공예정인 「성북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」 내 「(가)뷰티창업센터」 운영에 있어 다변화하는 청년 욕구에 맞춰 점차 확대되는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, 풍부한 청년 인프라를 보유하고 그에 따른 경험과 전문적 시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운영의 위탁) 및 제3항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대상 현황

- 시설명 : (가)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
- 위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45-1~3, 5층
- 규모 : 면적 242.9m<sup>2</sup> (센터 내 5층)
- 주요시설 : 헤어·메이크업·네일 등 실습·교육공간 / 소기업 입주실 / 사무실 등
- 운영인력 : 2명(센터장 1명, 직원 1명)

나. 위탁예정기간 : 2026. 3. ~ 2028. 12.(2년10개월)

다. 위탁방법 :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

#### 라. 위탁사무 내용

- 뷰티 산업 (예비)초기 창업자 대상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뷰티 산업 (예비)초기 1인 창업자 대상 보육 지원
- 관내 청년 대상 뷰티 관련 강좌 개발 및 운영
- 센터 및 프로그램 등 홍보사업 및 시설관리·운영
- 그 밖에 청년 뷰티창업 관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마. 위탁비용 : 100,000천원 (26년도 기준 / 10개월 운영 예정)

#### 바. 신청자격

- 뷰티 창업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‘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련 연구기관,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
-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분야에 경험과 적정한 능력을 갖춘 관련 연구기관,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
-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는 관련 연구기관,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
- 정치적, 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·법인은 제외

### 3. 관련근거

- 가.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(운영의 위탁)
- 나.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8조(고용 확대 및 취·창업지원), 제15조(시설 설치 및 운영)
- 다.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및 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#### 4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가. 청년창업을 촉진하고,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립 중인 ‘성북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’ 내 위치한 뷰티 관련 창업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뷰티 산업 관련 전문적인 경험과 풍부한 인프라를 보유한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성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

나. 관내 뷰티 관련 인프라 연계를 토대로 뷰티 관련 아카데미 과정부터 창업 기업의 보육 및 지원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창업환경 지원으로 지역 내 실질적인 창업기업 배출을 활성화하고자 함

#### 5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가.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#### 제8조(운영의 위탁)

-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연구기관, 산학 협력단, 그 밖에 비영리 법인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위탁기관의 선정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
-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나.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

##### 제8조(고용 확대 및 취·창업지원)

-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고,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, 필요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## 제15조(시설 설치 및 운영)

-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 다.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###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 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자활·취업·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문화·예술·영상·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4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사회적기업, 공정무역,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7.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청소, 경비, 교통,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